##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35 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선민·정춘생·황운하

강경숙 · 차규근 · 신장식

김재원 • 박은정 • 김준형

백선희 • 이해민 • 서왕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 14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환자안전사고의 접수·검증·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기관 지원

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절차"를 "절차, 제4항에 따른 현장지원 대상 보건의료기관의 선정, 지원 절차·내용"으로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,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중앙환자안전센터) ①	제8조의2(중앙환자안전센터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	2
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・검증	5.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・검증
<u>• 분석</u>	•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
	보건의료기관 지원
6. ·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	제14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
	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
	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
	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
	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
	석,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
	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	<u><u>5</u></u>
보고(이하 "의무보고"라 한다)	
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	
의 방법 및 <u>절차</u> 등은 보건복	<u>절차, 제4항에 따른</u>

지부렁으로 정한다.

현장지원 대상 보건의료기관의 선정, 지원 절차·내용-----.